

# 원재료 등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및 방법을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지난 9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조정에 근거를 두었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는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가 취해지며,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조치별 벌점은 다음과 같다.

### 조치별 벌점

조치	벌점
서면경고	0.25
경고	0.5
시정권고	1.0
시정명령	2.0
과징금	2.5
고발	3.0

벌점이 3년간 10점을 초과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15점 초과업체는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 일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 - 엠바고

엠바고(embargo)의 사전 풀이는 '출항금지, 봉쇄' 다. 말하자면 어느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은 주로 매스미디어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취재의 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시점까지 특정 사안의 보도를 유보 또는 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 금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고,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얽히면서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엠바고와 다른 뜻으로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 라는 말도 있다. 이는 '시한부 보도 자제' 가 아닌 '원칙적 보도 금지' 를 취재 대상과 약속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취재 기자가 '오프더레코드' 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또 문제가 터지곤 한다.

결국 의무와 매너……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듯하다.